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 모집 공고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추진하는 2023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받을 대상자 모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25.

서울특별시

1. 사업명 :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 사업
2. 총사업비 : 3,243백만원(국비50%, 시비40%) ※ 자부담 10% 별도
3. 지원대상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 버너
  - (방지시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비산배출시설로 옥내도장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포함(중소기업에 한함)
      -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사업\*으로 선정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및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에 따른 생활악취 발생시설
    - (사물인터넷)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저녹스버너)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제조시설,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 등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에 한함)
      -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가능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지방환경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4. 지원제외 대상

- (방지시설)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사물인터넷)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 (저녹스버너) 국가 또는 지자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5. 지원조건 :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자료전송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http://www.greenlink.or.kr), 이하 “IoT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 함

※ 저녹스버너는 사물인터넷 설치제외

## 6. 우선지원 대상

대상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저녹스버너
우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li> <li>·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li> <li>·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li> <li>· 주거지 인근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li> <li>·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li> <li>·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등</li> <li>·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li> <li>·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li> <li>· 「약취방지법」에 따라 약취관리지역이나 약취실태조사를 수행한 지역 또는 다수 약취민원 발생 지역 중 해당 지자체장이 소규모 사업장 광역단위 대기개선 시범사업을 신청한 지역 내 약취배출시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li> <li>· 신규 시설 중 4종</li> <li>· 신규 시설 중 5종</li> <li>· 기존 시설 순으로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호의 우선순위로 정하며 각호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 우선</li> <li>① 제조업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업종)</li> <li>② 제조업이외의 사업장</li> <li>·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li> <li>①연료전환(BC유→LNG)사업장</li> <li>②연료전환(경유→LNG)사업장</li> <li>③버너설치년수가 오래된 사업장</li> <li>④버너용량이 큰 사업장</li> </ul>

## 7. 지원내용 :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중 90%지원(부가가치세 제외)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이내로 지원(붙임1)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8. 신청기간 : 2023. 1. ~ 11. (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9.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접수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

10. 신청서 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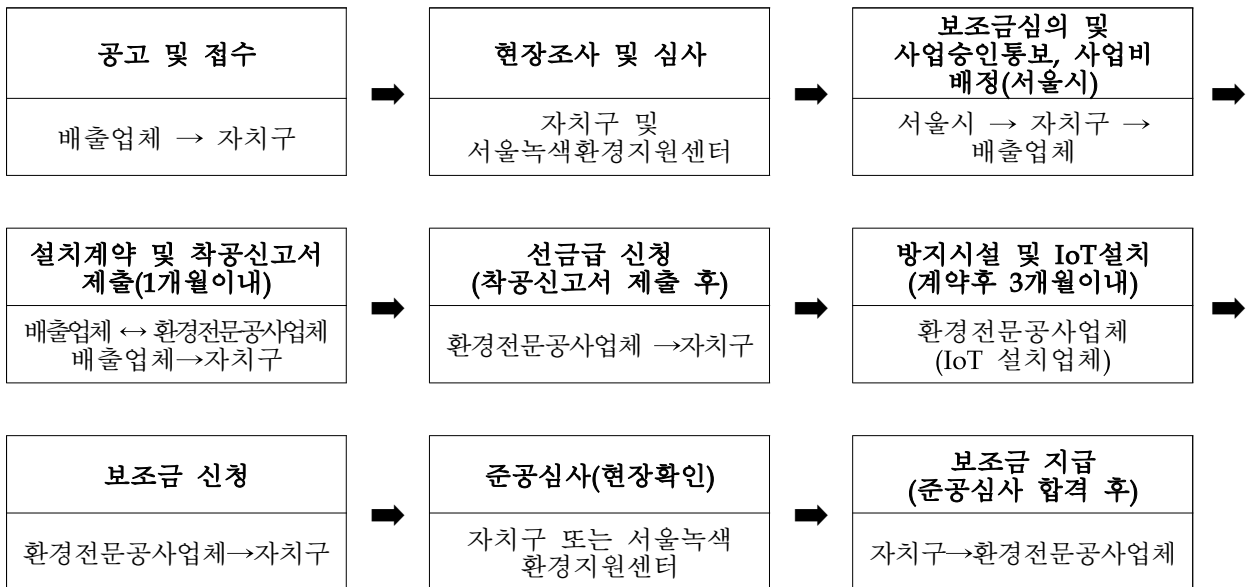
-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붙임3-1)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붙임3-2)
-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 지원 신청서(붙임3-3)

※ 각 신청서별 구비서류 참조

11. 지원절차

< 방지시설 등 설치 및 보조금 지급 절차 >



※ 접수 전 사전 기술진단 신청(자치구,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 가능

- 현장조사 및 심사 평가 : 100점 만점 평가(붙임 4)
  - 평가항목 :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35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20점), 사업장 여건(25점), 지원시급성 및 제출서류 충실도(20점)
  - 감점사항 : 실제현장과 상이한 설계 작성시(-10점), 자치구 등에서 보완요구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상 경과될 경우 (-10점) ※ 중복 감점 가능
  - 평가결과 : 평가점수 50점 미만은 부적격 처리

## 12. 추진사항

- 신청접수 : 2023. 1. ~ 11.(사업비 소진시 조기마감)
- 선정심의 : 매월1회 이상 실시 예정
- 설치계약 : 배출사업장이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1개월이내 계약
  - ※ 1개월 이내 착공되지 않거나, 중단 된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 반환
- 시설설치 : 계약 후 3개월 이내 방지사설 설치
  - ※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내 완공되지 않을 경우 사업 취소 및 선금을 반환하고  
다음연도 소규모사업장 보조금 지원사업 참여 제한
- 보조금 지급(자치구 → 환경전문공사업체) : 지급신청 후 1개월 이내

## 13. 보조금 환수

- 지원 받은 방지사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 방지사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14. 기타 세부사항은 환경부 '23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사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23.1.)'을 참조하여, 자세한 사항은 자치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1	종로구	환경과	2148-2467
2	중구	환경과	3396-5626
3	용산구	맑은환경과	2199-7672
4	성동구	맑은환경과	2286-5495
5	광진구	환경과	450-7808

연번	자치구	부서명	연락처
6	동대문구	기후환경과	2127-4639
7	종량구	맑은환경과	2094-2442
8	성북구	환경과	2241-3044
9	강북구	환경과	901-6754
10	도봉구	기후정책과	2091-3247
11	노원구	탄소중립추진단	2116-3214
12	은평구	기후환경과	351-7635
13	서대문구	기후환경과	330-8796
14	마포구	맑은환경과	3153-9262
15	양천구	녹색환경과	2620-4861
16	강서구	녹색환경과	2600-4016
17	구로구	환경과	860-2875
18	금천구	환경과	2627-1515
19	영등포구	환경과	2670-3463
20	동작구	환경과	820-9853
21	관악구	녹색환경과	879-6263
22	서초구	기후환경과	2155-6449
23	강남구	환경과	3423-6227
24	송파구	맑은환경과	2147-3284
25	강동구	기후환경과	3425-5934

-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1부.
2.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1부.
  -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 3-3.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서 1부.
  4. 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 1부.
  5.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 6-1.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 6-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 착공신고서 1부.
  - 7-1. 보조금 지급 신청서 1부.
  - 7-2.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8.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9. 소규모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 확인서 1부.

10-1. 위임장 1부.

10-2.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위임장 1부.

11-1. 보조금 반납 협약서 1부. 끝.

11-2. 보조금 반납 협약서(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지원) 1부.

12. 제비율 적용기준 1부(참고). 끝.

# [붙임 1]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한도 등

### 가. 방지시설

#### □ 시설별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3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응축시설(수냉식) 설치비 한도 최대 6.2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5.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 (방지시설 보조금액) 보조금 지원한도\* 내에서 방지시설 종류 및 시설 용량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입자상 및 가스상물질 2.7억원, RTO 등 5.6억원, 공동방지시설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 2021년 이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 <sup>3</sup> /분	3,307	2,977	1,654	1,323
	200m <sup>3</sup> /분	4,791	4,312	2,396	1,916
	300m <sup>3</sup> /분	6,028	5,425	3,014	2,411
	400m <sup>3</sup> /분	7,593	6,834	3,797	3,037
	500m <sup>3</sup> /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m <sup>3</sup> /분	1,300	1,170	650	520
	200m <sup>3</sup> /분	2,400	2,160	1,200	960
	300m <sup>3</sup> /분	2,800	2,520	1,400	1,120
	400m <sup>3</sup> /분	3,900	3,510	1,950	1,560
	500m <sup>3</sup> /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 의한 먼지용	100m <sup>3</sup> /분	3,508	3,157	1,754	1,403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시설		200 m³/분	4,568	4,111	2,284	1,827
		300 m³/분	5,629	5,066	2,815	2,251
		400 m³/분	7,391	6,652	3,696	2,956
		500 m³/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 m³/분	3,659	3,294	1,830	1,464
		200 m³/분	4,846	4,361	2,423	1,938
		300 m³/분	5,929	5,337	2,965	2,372
		400 m³/분	7,640	6,876	3,820	3,056
	500 m³/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 의한 시설		100 m³/분	1,706	1,535	853	682
		200 m³/분	3,034	2,731	1,517	1,214
		300 m³/분	3,544	3,190	1,772	1,418
		400 m³/분	4,667	4,201	2,334	1,867
		500 m³/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 m³/분	13,400	12,060	6,700	5,360
		200 m³/분	18,760	16,884	9,380	7,504
		300 m³/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 m³/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 m³/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 m³/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 m³/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 m³/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 m³/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 m³/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 m³/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 m³/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 m³/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 m³/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 m³/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10톤이상	16,896천원	15,206천원	8,448천원	6,758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m³/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m³/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m³/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m³/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m³/분	2,697	2,427	1,349	1,079
	200m³/분	3,928	3,535	1,964	1,571
	300m³/분	4,787	4,308	2,394	1,915
	400m³/분	6,239	5,615	3,120	2,496
	500m³/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 주5)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주6)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방지시설에 포함하여 지원 가능

< 2022년 이후 지원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장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m³/분	3,300	2,970	1,650	1,320
	200m³/분	4,700	4,230	2,350	1,880
	300m³/분	6,300	5,670	3,150	2,520
	400m³/분	7,500	6,750	3,750	3,000
	500m³/분	8,000	7,200	4,000	3,200
원심력집진시설	100m³/분	1,200	1,080	600	480
	200m³/분	2,300	2,070	1,150	920
	300m³/분	3,000	2,700	1,500	1,200
	400m³/분	3,800	3,420	1,900	1,520
	500m³/분	4,100	3,690	2,050	1,64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흡수에 의한 시설	면 지 용	100m³/분	3,500	3,150	1,750	1,400
		200m³/분	4,600	4,140	2,300	1,840
		300m³/분	6,100	5,490	3,050	2,440
		400m³/분	7,400	6,660	3,700	2,960
		500m³/분	8,400	7,560	4,200	3,360
	가 스 용	100m³/분	3,800	3,420	1,900	1,520
		200m³/분	5,000	4,500	2,500	2,000
		300m³/분	6,700	6,030	3,350	2,680
		400m³/분	7,900	7,110	3,950	3,160
		500m³/분	9,000	8,100	4,500	3,600
흡착에 의한 시설		100m³/분	1,600	1,440	800	640
		200m³/분	2,900	2,610	1,450	1,160
		300m³/분	3,500	3,150	1,750	1,400
		400m³/분	4,400	3,960	2,200	1,760
		500m³/분	5,000	4,500	2,500	2,000
RTO		100m³/분	14,500	13,050	7,250	5,800
		200m³/분	20,200	18,180	10,100	8,080
		300m³/분	31,600	28,440	15,800	12,640
		400m³/분	35,700	32,130	17,850	14,280
		500m³/분	38,300	34,470	19,150	15,320
RCO		100m³/분	21,600	19,440	10,800	8,640
		200m³/분	31,700	28,530	15,850	12,680
		300m³/분	48,000	43,200	24,000	19,200
		400m³/분	55,200	49,680	27,600	22,080
		500m³/분	61,800	55,620	30,900	24,720
SCR		100m³/분	24,300	21,870	12,150	9,720
		200m³/분	28,600	25,740	14,300	11,440
		300m³/분	33,200	29,880	16,600	13,280
		400m³/분	37,200	33,480	18,600	14,880
		500m³/분	40,700	36,630	20,350	16,28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천원	2,484천원	1,380천원	1,104천원
		0.3톤이상 0.5톤미만	4,823천원	4,341천원	2,412천원	1,929천원
		0.5톤이상 0.7톤미만	6,549천원	5,894천원	3,274천원	2,620천원
		0.7톤이상 1톤미만	7,406천원	6,665천원	3,703천원	2,962천원
		1톤이상 2톤미만	8,014천원	7,213천원	4,007천원	3,206천원
		2톤이상 3톤미만	8,494천원	7,645천원	4,247천원	3,398천원
		3톤이상 4톤미만	10,536천원	9,482천원	5,268천원	4,214천원
		4톤이상 5톤미만	11,247천원	10,122천원	5,623천원	4,499천원
		5톤이상 6톤미만	12,397천원	11,157천원	6,198천원	4,959천원
		6톤이상 7톤미만	13,120천원	11,808천원	6,560천원	5,248천원
		7톤이상 8톤미만	14,102천원	12,692천원	7,051천원	5,641천원
		8톤이상 10톤미만	15,627천원	14,064천원	7,813천원	6,251천원
전기집진시설		100m³/분	19,100	17,190	9,550	7,640
		200m³/분	28,300	25,470	14,150	11,320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300m <sup>3</sup> /분	39,900	35,910	19,950	15,960
	400m <sup>3</sup> /분	49,500	44,550	24,750	19,800
	500m <sup>3</sup> /분	60,500	54,450	30,250	24,200
응축에 의한 시설 (수냉식)	100m <sup>3</sup> /분	6,000	5,400	3,000	2,400
	200m <sup>3</sup> /분	8,900	8,010	4,450	3,560
	300m <sup>3</sup> /분	11,500	10,350	5,750	4,600
	400m <sup>3</sup> /분	14,100	12,690	7,050	5,640
	500m <sup>3</sup> /분	15,900	14,310	7,950	6,360
기타시설	100m <sup>3</sup> /분	2,697	2,427	1,349	1,079
	200m <sup>3</sup> /분	3,928	3,535	1,964	1,571
	300m <sup>3</sup> /분	4,787	4,308	2,394	1,915
	400m <sup>3</sup> /분	6,239	5,615	3,120	2,496
	500m <sup>3</sup> /분	7,568	6,811	3,784	3,027

-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이며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주2)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 주3)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kcal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kcal, 1usRT는 3,024kcal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 주4)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 주5) RTO 등의 방지시설 전단에 설치하는 농축기는 새로운 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방지시설의 효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실비를 보조금 지원 한도 외에서 추가 지원이 가능하며, RTO 본체에 대한 지원 금액은 농축 후 용량 기준으로 산정
- 주6)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보조금 지원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후드·덕트 교체, 현장 여건, **주5)에 따른 농축기 설치**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설치비 보조금액)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에 부착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종류별로 산정된 보조금을 지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분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전류계*	배출시설	30	27	15	12
	방지시설	30	27	15	12
차압계(압력계)		40	36	20	16
온도계		50	45	25	20
PH계		100	90	50	40
IOT게이트웨이		160	144	80	64
VPN		40	36	20	16

\* ID팬(유인송풍기), FD팬(압입송풍기) 등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흡수·세정 시설(스크러버)의 경우

\* 순환펌프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를 부착하여야 함[단, 부착 시 27만원(부착비용의 90%) 추가 지원]

## [붙임 2]

### 사물인터넷 부착대상, 부착시기 및 장치사양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 ①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7조의3[별표9의2] 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대상 시설, ②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사설 및 ③방지사설 설치면제 및 자가측정 면제와 관련하여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을 신청한 사업장의 습식 배출시설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사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 및 사물인터넷 게이트웨이 설치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방지사설 및 습식시설에 대해서는 제3장 나목에 따른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 및 보조금 한도를 동일하게 적용하며, ①방지사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신규 시설 중 4종, ③신규 시설 중 5종, ④기존 시설 순으로 우선지원
    -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 (지원제외)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비 고
측정기기	배출 및 방지사설 적정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장치	
IoT 게이트웨이	측정기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측정기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관리시스템	배출 및 방지사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리시스템 (www.greenlink.or.kr), 운영기관 : 한국환경공단 ※ 문의사항 연락처 : 1533-3301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측정자료는 IoT 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전송되어야 하며, 측정기기 규격, 사양, 부착 절차, 유지·관리 등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2022.11.) 참조

□ (설치시기)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방지사설 설치사업과 동시에 완료(진행)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규격 및 사양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규격

- 측정항목별 측정기기는 다음과 같은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설치하여야 하며, 제품(모델명 기준)의 품질보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포함하여야 함. 다만, KS인증을 획득한 제품에 대해서는 KS인증으로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음

구분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	pH계
설치대상	- 배출시설(공통) - 방지사설(공통)	- 여과집진시설 - 흡착에 의한 시설		- 흡수에 의한 시설
측정범위	0 ~ 600A1)	0 ~ 500mmH2O2)	-40 ~ 100℃3)	0 ~ 14pH
오차4)	±2.0% 이내	±0.5% 이내	±1.5℃ 또는 ±1.0%RD 중 큰 값	±0.6%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동작온도	-20 ~ 60℃	-20 ~ 60℃	-20 ~ 60℃	0 ~ 80℃
형식	-	-	Pt 100Ω, 열전대 등	-
분해능	-	-	-	0.1pH 이하
공통사항	(출력신호5) 4 ~ 20mA (표시장치6)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내구성) 실내·외에서 장기간 연속 측정 시 외부의 요인 등에 영향이 없어야 함			

- 1) 전류의 측정범위는 측정 부하의 도선 굵기 및 차단기 용량에 따라 달리 사용할 수 있음
- 2) 압력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500mmH<sub>2</sub>O 이상)
- 3) 온도의 측정범위는 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음(필요시, ~1,000℃ 적용)
- 4) 오차는 공인시험성적서 기준임
- 5) 출력신호는 Gateway와 호환이 가능한 신호이면 mA 이외의 출력신호도 가능함
- 6) 표시장치는 Gateway의 측정값 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전류계, 차압계, 온도계에서 각각 측정된 값은 측정기기의 측정범위를 초과할 수 없음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게이트웨이(Gateway)에 표시되는 가동정보와 상태정보의 단위는 그린링크의 단위와 일치하여야 함

○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사양

1) 전류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0 ~ 600A
출력신호	4 ~ 20mA
오차	±2% 이내
동작온도	-20 ~ 60℃
기타	설치 시 현장 설비에 영향이 없어야 하며, 전류값을 측정하는 시설명1)을 표식하여야 함

1) 배출시설(배출 1, 배출 2), 방지시설(송풍 1, 송풍 2), 전기집진시설(전기 1, 전기 2) 등

2)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무게	1kg 이하(설치 시, 과도한 무게로 인한 무리가 없어야 함)

3)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범위 및 타입	-40℃ ~ 100℃(필요시, ~1,000℃ 적용),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 값
표시장치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동작온도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4) pH계

구 분	사 양	비 고
측정범위	0 ~ 14pH	pH 전극
사용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범위	0 ~ 14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신호	4 ~ 20mA	
온도보상	0 ~ 5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붙임 3-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성명(담당자)			직 급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시공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⑤ 성명(대표자)			
	⑥ 성명(담당자)			핸드폰번호			
	이메일			팩 스			
사업장 현황	⑦ 주 소 (전 화 번 호 : )						
	⑧ 사업장소재지 (전 화 번 호 : )						
	⑨ 업 종(종별) ( 종) ⑩ 주생산품명						
	⑪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이론적배출농도
		반	드	시	작	성	
		(별	(별	첨	안	됨)	
설치 및 개선대상	⑫ 설치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 년 월) ※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기재 및 증빙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공 예정일	준공 예정일		총 공사기간	일		
	예상 총사업비 (IoT 포함) (VAT제외) 만원단위 절사	• 방 지 시 설 :	원	예상 보조금 (국비 + 지방비) 신청액	원		
		• 사 물 인 터 넷 :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및 가동개시일 증빙 자료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양식 참조) 1부. 4. 사업자 등록증(배출업체, 시공업체)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최근 1년간 자료)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양식 첨부)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9.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10. 이행확인서(배출업체,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양식참조) 각1부. 11.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12.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배출업체) 각 1부. 13. 건축물 대장, (해당시)임대차 계약서(소유권 확인용) 각 1부. 14.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양식참조) 각1부.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양식 참조) 1부.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양식 참고) 1부. 17. 보조금 반납 약약서(서식17) 1부. ※ 신청서(구비서류 포함) 총 2부(노란색 정부화일철),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PDF 파일 제출 ※ 모든 서류 날인시, 인감 도장 사용							

**【구비서류 1】**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1. 사업(공사)개요

가. 대상업체

사업장 명칭		업종/대기종수	
사업장 소재지			

나. 해당시설 설치공사 목적 및 필요성

※ 해당시설로 인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상세히 기술

### 2. 대기오염 배출·방지시설 설치 내역

가. 시설 내역

1) 대상 시설 전, 후 내역

기존 시설							변경 후 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배출시설			방지시설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설치년도	시설명	용량	수량	시설명	용량	수량

※ 기존 방지시설 설치년도는 **가동개시일 기준**으로 작성할 것

※ 설치용량 변경 시 변경사유(풍량 재산정 등) 기재

2) 오염물질 개선계획 (※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표시)

오염물질	b.자가측정 농도 (개선 전)	a.오염물질 발생농도 (이론산출)	c.개선 후 배출농도 (목표농도)	현 처리효율 $(a-b) \div a$	방지시설 개선효율 $[(a-c) \div a]$

※ 자가측정 농도(먼지 포함)는 최근 2회 측정 평균 농도 또는 최대치 택 1 작성.

(자가측정기록부, 오염물질 이론발생농도 산정자료 등 근거자료 첨부)

※ 준공 후 자가측정기록부 자료 제출

3) 보증 사항(설치 후)

※ 오염물질 저감효율, 풍량 등 제시

4) 대상시설 사진(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① 배출시설 내역서

※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 기재(작성일 기준으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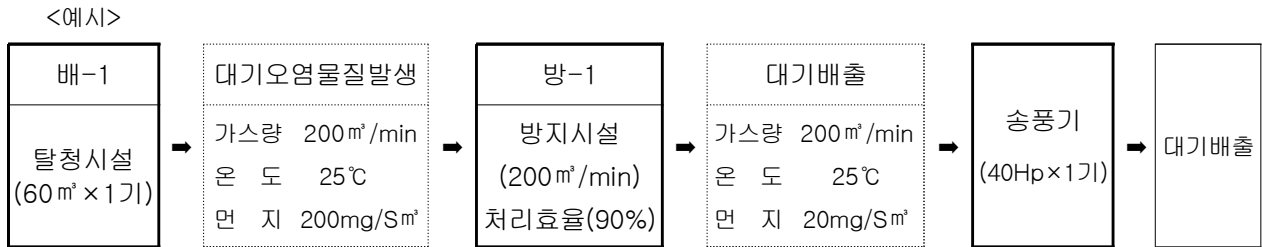
구분	배출시설명	용량 (단위기재)	관련사진
1	예시) 연마시설	15.8KW	“사진첨부”
2			
3			
4			
5			

②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 전 사진(상세히)

<사진>	<사진>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사진첨부”	“사진첨부”
설명	설명

나. 설치 방지시설 개요

- 1) 방지시설 채택 이유 (노화 또는 부식, 처리효율의 감소 등)
- 2) 채택한 방지시설의 처리 원리 및 특이사항
- 3) 처리계통도 (세부시설내역 및 용량을 표시한 표로 작성하고 개선 전과 후로 나눠 표시)



다. 설계 사양

1) 배출시설별 배기풍량 및 오염물질발생량 산정

- ①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문헌을 참조하여 작성하고, 참조한 문헌 등은 첨부로 제출.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 환경기술감리표준화
  -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 EPA 배출계수
  - 실제 측정 자료
  - 국소포집시설 설계 편람 등
- ② 배출시설별로 오염물질 농도, 온도와 풍량을 계산하고,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의 혼합 가스에 대한 농도, 온도 및 풍량을 계산

2) 방지시설 설계내역서

가) 방지시설 개요 (예시)

- 명칭 : 여과집진시설
- 형식 : Bag-Filter or Cartridge-Filter
- 필터규격 :
- 여과집진시설 탈진방식 :

나) 방지시설 본체의 설계 및 계산근거

① 통과속도 (여과속도) 계산

「대기오염방지시설설계실무편람(1999. 07, 대구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을 제시

② 필요 면적 또는 직경 : 통과(여과)속도에 따른 직경 또는 면적 계산

③ 내부 부품 설계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여과필터(활성탄흡착층) 규격 및 수량
- 활성탄 적재방식 설명 : 활성탄은 요오드가 1,000이상 사용
- 활성탄(여과필터) 교체주기
- 충전층의 종류 및 높이, 사양
- 부대시설 설치사양 : 차압계, 레귤레이터, 로타리밸브 등
- 연료, 원료 등의 사용량 및 제품의 생산량, 작업시간 고려

다) 덕트의 설계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산업환기메뉴얼의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설계기준 제시

라) 압력손실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도면 또는 그림파일 세부내역 제출
- 배출시설 → 덕트 → 방지시설 최종 배출시 까지 압력손실 산출

마) 송풍기의 동력 계산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실무편람 및 산업환기메뉴얼 등 객관적인 문헌 등의 서술된 기준 제시
- 동력의 여유율은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

바) 세정수 순환펌프

- 액가스비, 유량과 수두(mH) 등 사양 명기
- 사양에 따른 동력 계산

라. 방지시설 유지관리 계획

1) 유지관리계획 : 후드 및 덕트, 방지시설, 송풍기 등

2) 유지관리비용 산정

가) 소모품 교체비(활성탄, 여과필터, 데미스터, 폴링 등)

※ 자체제작 소모품의 경우 설치 이후 안정적인 공급 방법 제시

나) 전력비

다) 기타 보수비

### 3. 공사 설계도면(설계도면은 A3 또는 A4 제출)

- 1) 방지시설 처리 흐름도(P&ID)
- 2)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배치도,
- 3) 방지시설 외형도 (측정구 형태 및 위치가 포함)
- 4) 방지시설 내부도(물량 확인용),
- 5) 배관 및 덕트 설치도 (방지시설과 연계)
- 6) 방지시설 지지용 철구조물 및 유지보수용 사다리 및 계단 도면
- 6) 전기판넬 외형도 및 회로도,
- 7) IOT 외형도 및 회로도 등(사업장 내 설치위치, 치수, 부품위치 표시된 도면)
- 8) 기타 사항
  - 물량산출 확인 가능하도록 치수 명기.
  - 기타 특기 사항 및 특수 공법이 반영될 경우에는 입증할 수 있는 도면 포함
  - 공사의 특이성이 있는 경우 별도의 도면 제출
  - 필요에 따라 기초, 보온 등 도면

4.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 부가가치세 제외하며 천원 단위는 절사함) => 번호정리

※ 다수의 방지시설일 경우 방지시설별 공사 소요금액 산출내역 필히 개별 작성

가. 공사비 총괄내역

총공사금액 (①+②+③)	방지시설①	방지시설②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예시] 방지시설①=방지시설A+사물인터넷A'

방지시설②=방지시설B+사물인터넷B'

1)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①)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① (A+A')	방지시설 (A-①)	사물인터넷(IoT) (A'-①)	비 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A-①)

공사종별		금액(원)	세부산출내역
합계			
공사비	소계		※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
	토목공사		
	철구조물공사		
	기계공사		
	배관(덕트)공사		
	전기공사		
	건축공사		
	기타공사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다) 사물인터넷(IoT)

\*사물인터넷 공사비용은 개별 단가를 적용하여 금액을 산출하여 정액지원함.

구분	공사종별	공사구분			비고
		단가	수량	금액	
순 공 사 원 가	차압계 (압력계)	400,000			단위 : 원 (VAT제외)
	pH계 (흡수·세정시설)	1,000,000			
	전류계 (전기집진시설)	300,000			
	온도계	500,000			
	전배출류시계설	300,000			
	전방지류시계설	300,000			
	IoT계이트웨이	1,600,000			
	VPN	400,000			
	합계(A'-②)				

2) 공사 금액 총괄내역 (방지시설 ②)

가) 공사금액 총괄

공사금액② (A+A')	방지시설 (A-②)	사물인터넷(IoT) (A'-②)	비고
			(단위 : 원, VAT제외)

나) 방지시설

다) 사물인터넷(IoT)

※ 신청 방지시설 여러 개일 경우, 방지시설별로 구분하여 내역서 작성

- 나. 공사원가계산서
- 다. 공사비 집계표
- 라. 공사비 세부내역서
- 마. 자재수량 산출서
- 바. 일위대가표 또는 적산정보사본
  - 일위대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및 표준품셈을 적용하여 산출할 것 또는 당해연도 최근 종합적산정보 및 종합적산자료를 적용하여 산출(해당 품목 밀줄)
- 사. 자재단가표
  - 종합물가정보(또는 종합물자자료) 당해연도 1월호 이후의 단가적용하여 제출.예) 전동기, 활성탄
  - 물가정보 또는 물가자료에 단가가 없는 경우 구매업체 복수견적서 제출
- 아. 노무비 단가 : 당해연도 최근 정부노임단가 적용

※ 해당년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총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건설공사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 모든 건설공사 의무사항
-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공사기간 1개월(30일)이상 모든 공사에 반영
- 일반관리비 : (재료비+노무비+경비) \* 6%이내
- 이윤 :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이내
- 원가계산서 상 외부 크레인 등 장비 사용료는 경비 항목으로 구성
- 기타경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는 제외

5. 자체 방지사설 투자계획(해당시)

총공사비(A)	신청서 총사업비(B)	자체 방지사설 투자(C)
천원단위 절사	4. 공사 소요금액 기재	A - B

※ 설치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는 자체 방지사설 투자비용으로 별도 산출

6. 사업장 방지사설 지원(신청)실적

-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사설 내역
- ※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 【구비서류 10】 이 행 확 인 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 : )

상기 본인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위배되거나 기타 보조금 승인 조건에 위배될 경우에는 승인내용이 취소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특히, “가호”, “다호”, “라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지원제한, “나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과 미이행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에 따라 국세징수의 예로 강제 징수됨을 확인합니다.

- 가. 보조금 교부 조건에 위배하였을 때
- 나. 보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
- 다.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 라.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감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 “나호”의 경우 보조금 반환액

: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보조금 지원금액 회수기준 참고)

년 월 일

대 표 자

(인감도장)

00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사후관리 이행 동의서

방지시설 설치 익년부터 3년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개선사업 사후관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 .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5】**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신청(배출)업체		총 소요금액	
환경전문공사업체		(보조금)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 계획**

처리공정 및 측정기기류 설치 계획(도면)
도면 삽입 또는 첨부

- 1) pH계 : 흡수탑 집수조 상단에 1기 설치
- 2) 온도계 : 흡수탑 배출덕트 측정구 하단에 1기 설치
- 3) 배출시설 전류계 : 배출시설 5기에 각 1기, 세정펌프에 1기 총 6기 설치  
\* 흡수시설·세정집진시설의 경우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류계 포함
- 4) 방지시설 전류계 : 메인판넬 메인차단기에 1기 설치
- 5) IOT 게이트웨이 : 방지시설 MCC 측면에 설치
- 6) VPN : IOT 게이트웨이 포함

**2. 설치 사유**

- 배출시설 5기에 전류계를 각각 설치하여야 배출시설 가동 유무 확인 가능
- 세정펌프의 가동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전류계 1기 추가 설치
- 방지시설은 분전반 메인판넬 메인차단기 1기 설치로 가동 유무 확인 가능

3.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현장조사 후 적정 설치할 것이며 추가 및 변경사항(데이터 전송, 측정기기 추가 설치 등) 발생시, 환경전문공사업체 측에서 소요금액 부담 및 추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20 . . .

신청(배출)업체 : 0000 대표 (인)

환경전문공사업체 : 0000(주) 대표이사 (인)

**OO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3-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b>1. 신청인(사업자)</b>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화번호	( ) -
업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치장소	( )		
<b>2. 사업장 현황</b>			
대기종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비종류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input type="checkbox"/> 냉온수기 <input type="checkbox"/>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용연료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전열면적	(m <sup>2</sup> )	연소실용적	(m <sup>3</sup> )
<b>3. 설치예정내역</b>			
제작사		모델명	
판매사		사용연료	
설비종류(형식)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m <sup>3</sup> /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m <sup>3</sup> ·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input type="checkbox"/>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input type="checkbox"/>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b>4. 신청 금액</b>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b>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용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b>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2.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청인 (인)

○ ○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목적

-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 (인)  
대표자            ○○○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붙임 4]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1. 서류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점)	○ 방지기술의 적정성				
	-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적절히 처리될 수 있는 기술이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여부 검토(방지시설 처리 방식)				
	· 우수 : 오염물질 항목별로 적절히 처리가 가능한 방식이 선정되었음.				
	· 보통 : 일부 오염물질은 처리 효율이 다소 감소할 수 있으나,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 예상되는 방식이 선정되었음.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 기초설계의 적정성				
	- 방지시설의 용량선정과 및 처리효율 등에 대한 기초 설계(설계 인자)가 적절한지 검토 (예) 체류시간, 포착속도 등				
	· 우수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며, 각 설계 인자가 적절하게 선정이 되었음				
· 보통 :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가 예상되나, 일부 인자는 조정이 필요함.					
· 미흡 : 오염물질 처리 효율이 없거나 매우 낮아 재설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1점		
○ 사업비의 적정성					
- 환경부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의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을 기준으로 하여 방지시설의 사업비 적정성을 판단.					
· 사업비의 상세 내역에 대하여 판단 불가하거나 적정한 사유가 없이 환경부의 기준금액 초과 : 0점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0점		
○ 설계서간의 불일치 정도					
- 사업장 현장과 제출된 방지시설설계서 및 산출내역, 도면 등이 일치하는지 검토					
· 우수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등이 일치					
· 보통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대부분 일치하나 일부 내용 미일치					
· 미흡 : 사업장 현장과 설계서 및 산출내역 등이 미일치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5점	0점		

## 2. 현장심사 항목

구 분	항목 및 배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 서류심사 및 현장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오염물질의 저감 예상 효과 검토				
	구 분	20%이상저감	20%미만~10%이상	10%미만	
	배점	5점	3점	1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유지관리의 용이성				
	- 유지관리를 수행할 때 다음 항목이 설계에 반영되어 있고 현장 상황에 맞는지 판단{유지관리 공간(배치도 등), 편의성}				
	· 우수 : 2가지 항목을 모두 사전에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되었고, 용이함.				
	· 보통 : 2가지 항목이 모두 사전에 고려되었으나, 일부 부족한 부분(공간적 여유, 편의성)이 있음.				
· 미흡 : 사전에 고려되지 않아 배치도 등 설계에 반영되지 않음.					
구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0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유지관리 지침(매뉴얼 등)				
	- 설치 후 유지관리 계획(매뉴얼 등)이 사전에 확립되었고, 적절한지에 대한 평가				
	· 우수 :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으며, 사업장과 방지시설 특성에 맞게 계획되어 있음.				
	· 보통 : 유지관리 계획서가 있으나, 사업장 또는 방지시설에 맞춤이 아니므로 일부 보완이 필요.				
· 미흡 : 매뉴얼에 대한 보완 필요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배점	5점	3점	1점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 설명				
	- 유지관리 방법 및 연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하여 현장실사 이전에 방지 시설 업체에서 사업장에 설명을 진행하였는지 여부				
	· 우수 :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있었음				
	· 미흡 : 유지관리 방법 및 비용에 대한 사전 설명이 없었음				
구 분	우수		미흡		
배점	5점		0점		
사업장 여건 (25점)	○ 사업장 및 주거지 이격거리				
	구분	200m 이내	500m 이내	1km 이내	1km 초과
	배점	12점	9점	5점	3점
	○ 교체(신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최소 3년 이상, 가동개시일 기준)				
구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배점	13점	8점	5점	3점	

구 분	항목 및 배점				
지원시급성 및 서류 제출 총실도 (20점)	○ 지역 특성 및 민원발생 등 선정 시급성				
	- 사업장관련 민원 발생여부				
	구분	시급(민원발생)		보통	
	배점	10점		5점	
	○ 구비서류 제출여부				
	- 사업신청시 첨부서류 완성도 유무				
	구분	제출완료	1~2건 미제출	2~4건 미제출	5건이상 미제출
	배점	10점	9점	8점	7점

# 서류 및 현장실사 평가표

		실사일자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			
구분	세부항목	배점			점수
기초설계 및 사업비의 적정성 (35점)	- 방지기술의 적정성 (공법 선정)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 기초설계의 적정성 (설계인자 및 수리계산 등)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1	
- 사업비의 적정성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 설계서간의 불일치 정도 (계산서, 내역서, 도면)	10	우수	10		
			보통	5	
			미흡	0	
기대효과 및 사후관리 (20점)	- 기존 방지시설 대비 처리효율 증가	5	20% 이상	5	
			20% ~ 10%	3	
			10% 미만	1	
	- 유지관리의 용이성 (유지관리 공간, 편의성 등)	5	우수	5	
			보통	3	
			미흡	0	
- 유지관리 지침(매뉴얼 등)	5	우수	5		
			보통	3	
			미흡	1	
- 유지관리에 대한 사전 설명	5	우수	5		
			미흡	0	
사업장여건 (25점)	- 사업장과 주거지 거리	12	200m 이내	12	
			500m 이내	9	
			1km 이내	5	
			1km 초과	3	
-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최소3년이상, 가동개시일 기준)	13	15년 이상	13		
			10년 이상	8	
			7년 이상	5	
			3년 초과 5년 이하	3	
지원 시급성 및 서류 제출 충실도 (20점)	- 지역의 특성 및 민원발생 (자치구 민원발생여부 확인)	10	시급(민원 발생)	10	
			보통	5	
- 구비서류 제출여부	10	제출완료	10		
			1~2건 미제출	9	
			2~4건 미제출	8	
			5건이상 미제출	7	
합 계					
					년 월 일
보고자 : 현장실사위원					인
OOO구청장 귀하					
붙임 : 현장기술지원보고서					



# 〈기술지원결과 보고서〉

## 1. 사업장 일반현황

사업장명		대표자 (업무담당자)	대표이사 ( )
소재지			
전화번호 (담당자)		업종	
주요생산품		조업시간	

## 2. 오염물질 발생공정 및 기존 방지시설 현황

업체 현황 (생산공정 등)					
배출시설	오염물질 종류	방지시설 종류	방지시설용량 (m <sup>3</sup> /min)	설치일 (가동개시일)	비고
예시) 도장 및 건조 시설	먼지, THC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60	2001.05.04	
기 타 사 항					

## 3. 방지시설 변경사항

번호	방지시설 종류		설계용량(m <sup>3</sup> /min)	
	기존 방지시설	신규 방지시설	기존 방지시설	신규 방지시설
예시)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여과 및 흡착에 의한 시설	360	380
기 타(후드 및 덕트개선 여부 등)				

<b>사업비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환경부 기준 금액과 비교 및 철거비 제외, 배출시설 증가 등에 대하여 검토</li> </ul>
<b>방지기술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적용기술이 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 가능한 방법으로 선정되었는지 검토</li> </ul>
<b>설계의 적정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방지설비 설계 관련 하여 적용한 인자 위주로 논리성 및 합리성 판단</li> <li>- 방지시설의 용량 및 압력손실 등의 기초설계 적정성 기술</li> <li>- 배출농도, 배출가스량, 발생량(배출량), 제거효율 등</li> </ul>
<b>구비서류의 적정성 (도면, 내역 등)</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사업을 위해 구성된 서류 등이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여부</li> <li>- 현장방문 및 현장상황 반영 여부</li> </ul>
<b>기 타 (종합의견)</b>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의견 서술</li> <li>- 변경 또는 재검토가 필요한 내용에 대하여 서술</li> </ul>

사진자료 (주요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붙임 7-1]

##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환경전문 공사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 팩스			
방지 시설 등 설치 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 량	
				⑧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측정기기 종류	수 량		
설치 기간 및 개선 효과	⑨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21. . . ~ 2021.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⑩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 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⑪ 총 사업비		⑬ 보조금(선금) 신 청액				
	⑫ 보조금 사업비		⑭ 보조금(잔금) 신 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년</span> <span>월</span> <span>일</span> </div>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span>신청인</span> <span>(인감도장)</span> </div>							
○○시장 귀하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li> <li>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방지시설 설치 후) 1부.</li> <li>3. 사업장 위치도 1부.</li> <li>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1부.</li> <li>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1부.</li> <li>6. 통장 사본(설치업체) 1부.</li> <li>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 1부.</li> <li>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부.</li> <li>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li> </ol>							

[붙임 7-2]

## 보조금 지급 신청서(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신청인	배출업체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설치업체	④ 상호(사업장 명칭)		대표자	
⑤ 소재지			전화팩스		
설치내역	⑥ 관련 대기배출시설			⑦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내역	
	대기배출시설명	규격	수량	측정기기 종류	수량
신청내용	⑧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⑨ 보조금 사업비				
<p>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인       (인감도장)</p> <p>○○시장 귀하</p>					
<p>※ 구비서류</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업비 산출내역. 1부</li> <li>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li> <li>3. 사업장 위치도 1부.</li> <li>4.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li> <li>5.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li> <li>6. 통장 사본(설치업체)</li> <li>7. 하자이행보증이행증권(VAT 포함, 2년, 5%)</li> <li>8. 세금계산서(설치업체 ⇒ 사업장) - 총 공사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li> <li>9.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설치업체) ※ 증명서 유효기간 필히 확인</li> </ol>					



## 측정기기 설치 사진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배출시설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설치장소 : ID 팬	설치장소 :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사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사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사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방지사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사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사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사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11-2]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만을 부착 지원받는 경우만 작성**

## 보조금 반납 약속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약속합니다.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별 반납율 >

측정기기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 [붙임 12]

## 2023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3. 1. 2.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공사규모 (직접공사비)	공사기간	[간접노무비]		[기타정비]		공사규모 (추정가격)	[일반관리비]		[이율]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직노) x 총		(재+노) x 총			(재+노+공) x 총			(노+경+일) x 총	(직접공사비) x 총				□ 도급자관급 미포함 공사		(재+직노) x 총 + 기초액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 설비 (건축)		건축 산업설비	전문 전기 소방기타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 도급자관급 포함 공사		(재+직노+도급자관급) x 총 + 기초액과 (재+직노) x 총 + 기초액) x 1.2 중에 작은 금액	
5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2.5	12.5	7.8	7.8	5억 미만	6.0	15.0	구분	구분	요율	구분	요율	안전관리비 대상액 <sup>*)</sup>	구분	요율	기초액(천원)	
	7~12개월 (365일)	12.4	12.4	7.7	7.7					건축공사	0.07	비계구조물예제공사	0.68		5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2.93
	13~36개월 (1095일)	12.1	12.1	8.1	8.1											일반건설공사(을)		3.09
50억 ~ 3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1.4	11.4	7.6	7.6	5억 ~ 30억 미만	5.5	15.0	신업설비공사	0.16	석공사, 시성물유지관리, 철근콘크리트공사, 가스시설공사(기중)	0.32	50억 ~ 500억 미만	중건설공사		3.43		
	7~12개월 (365일)	11.7	11.7	7.5	7.5									철도·케도건설공사	2.45			
	13~36개월 (1095일)	11.3	11.3	7.9	7.9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300억 ~ 1000억 미만	6개월 이하 (183일)	10.6	10.6	7.4	7.4	50억 미만	5.0	12.0	도장공사, 절경개설공사	0.16	기계설비공사 및 그 외	0.10	50억 ~ 500억 미만	일반건설공사(갑)	1.86	5,349		
	7~12개월 (365일)	11.6	11.6	7.5	7.5									일반건설공사(을)	1.99	5,499		
	13~36개월 (1095일)	11.2	11.2	7.7	7.7									중건설공사	2.35	5,400		
1000억 이상	6개월 이하 (183일)	11.2	11.2	7.6	7.6	300억 ~ 1000억 미만	5.0	4.5	10.0	* 적용제외: 문화재수리공사,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 및 업종별 건설기계 투입비율 산정기준(국토부 고시 제2019-286호, 2019.6.19.)	50억 이상	추정금액 800억 미만 건설공사	철도·케도건설공사	1.57	4,411		
	7~12개월 (365일)	11.1	11.1	7.4	7.4									일반건설공사(갑)	1.97			
	13~36개월 (1095일)	10.8	10.8	7.8	7.8									일반건설공사(을)	2.10			
* 기타정비 항목: 수도관도면, 복귀호성비, 소요품비 및 사무용품비, 예비·교류물품비, 세공과공비, 도색인쇄비		□ 산업설비(건축) 해당공종: 지원공사, 조각시설 등		1000억 이상		4.5	9.0					추정금액 900억 이상 건설공사	철도·케도건설공사	1.66				
													일반건설공사(갑)	2.15				
													일반건설공사(을)	2.29				
[산재보험료]		(노) x 3.7		[환경보전비]		(직접공사비) x 총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직접공사비) x 총								
* 모든 건설공사 적용, 노동부 고시 제2021-95호(2021. 12. 29),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구분		구분		구분		구분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도로(배차 교환, 터널, 횡포 등) 등		0.9		50억 미만		0.081								
[고용보험료]		(노) x 총		출판(배차) 발전소, 쓰레기조각장 등)		0.4		50억 이상 ~ 100억 미만		0.080								
공사배정규모(추정금액)		요율		지하철		0.5		100억 이상 ~ 300억 미만		0.075								
[1등급] 1200억 이상		1.57		철도		1.5		300억 이상 중상·중형제(토목, 및 산업설비)		0.071								
[2등급] 1200억 미만 ~ 950억 이상		1.30		실학수도(배차: 배차, 하수처리장, 정수장 등)		0.5		3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8								
[3등급] 950억 미만 ~ 550억 이상		1.13		방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설치		1.8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4등급] 550억 미만 ~ 400억 이상		1.06		방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0.8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5등급] 400억 미만 ~ 220억 이상		1.03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6등급] 220억 미만 ~ 130억 이상		1.02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7등급] 130억 미만 ~ 81억(고시금액) 이상		1.01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7등급 미만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 모든 건설공사에 적용, 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2021.7.1), 고용보험법 시행령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 공사기간 1개월(30일) 이상인 모든 건설공사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 사회보험의 보험료 적용기준(국토부 고시 제2021-905호, 2021.7.1.)				향안(간척, 준설), 오락 또는 콘서트 방지막 대체지		1.1		500억 이상 중상·중형제(건축)		0.064								
[건강보험료]		(직노) x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간접보험료) x 12.81		[연금보험료]		(직노) x 4.5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추정금액이 1억 이상인 건설공사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6.20) 요율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6.20) 요율 적용				* 국토부 고시 제2015-610호(2015.6.20) 요율 적용										
□ 전기·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하고 각공 종별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전기·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하고 각공 종별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 전기·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의 경우 일반관리비요율을 제외하고 각공 종별은 건축, 토목 등 관련 공사업종에 따라 적용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 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 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단: 공사규모 및 기간은 해당공종(전기, 통신·소방·전선 및 기타공사)을 기준으로 함)										

위 적용기준은 조달청 발주공사에 적용하는 기준이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